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6월 18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6월 8일, 포항시장
- 2) 회부일자 : 2026년 6월 8일
- 3) 상정일자
 - 제33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6. 18.)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동하 총무새마을과장)

1) 개정이유

- 기구 명칭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정운영의 체계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명칭 변경(안 별표 3)

- 건설교통사업본부 → 건설교통사업소,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종율)

-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 건설교통사업본부 명칭을 건설교통사업소로 변경함에 따라, 사무위임 조례에 명시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략

5. 토론의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